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3
------------	----

제출년월일 : '96.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 함.(안 제18조)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통령령 제14825호('95. 12. 14) : 공무원복무규정중 개정령
- 인사 12100-4('96. 1. 5)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시달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구청장은”을 “소속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연누계 60일의”을 “연 60일의”로 하며, 동조 동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중의 “구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제24조 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 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은”을 삽입하고 “6일내의”를 “6일이내의”로 하며, “할 수 있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4조 제6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제1항중 “제27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하며 단서규정은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중 “정치목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행위를”을 “행위를 함을”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착용, 권유”를 “착용·착용권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당직근무)</u>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정,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p> <p>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파견근무) ① · ②(생 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u>을 준용한다.</p> <p>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p>	<p><u>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u> ① ----- ----- ----- ----- <u>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u> ----- ----- ----- ----- -----.</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 ----- -----, <u>당직 및 비상근무</u> ----- -----.</p> <p>④ <u>당직 및 비상근무</u> ----- -----.</p> <p>제10조(파견근무)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 ----- ----- ----- ----- -----.</p>
<u>제2장 근무시간</u>	<u>제2장 근무시간등</u>
<p>제13조(근무시간) ① (생 략)</p> <p>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가지로 하되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u> -----.</p>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u>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 ----- ----- <u>근무시간 또는 근무일</u> -----.																																		
제18조(연가일수) <u>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u> <u>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u> <u>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제18조(연가일수) <u>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u>																																		
<table border="1"> <thead> <tr> <th>근 속 기 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 <td><u>3 일</u></td> </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 <td><u>7 일</u></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u>8 일</u></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u>11 일</u></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u>14 일</u></td> </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 <td><u>17 일</u></td> </tr> <tr> <td><u>5년이상</u></td> <td><u>20 일</u></td> </tr> <tr> <td><u>〈신 설〉</u></td> <td></td> </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3 일</u>	6월이상 1년미만	<u>7 일</u>	1년이상 2년미만	<u>8 일</u>	2년이상 3년미만	<u>11 일</u>	3년이상 4년미만	<u>14 일</u>	4년이상 5년미만	<u>17 일</u>	<u>5년이상</u>	<u>20 일</u>	<u>〈신 설〉</u>		<table border="1"> <thead> <tr> <th>근 속 기 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u>4 일</u></td> </tr> <tr> <td>-----</td> <td><u>10 일</u></td> </tr> <tr> <td>-----</td> <td><u>13 일</u></td> </tr> <tr> <td>-----</td> <td><u>16 일</u></td> </tr> <tr> <td>-----</td> <td><u>19 일</u></td> </tr> <tr> <td><u>5년이상 6년미만</u></td> <td><u>22 일</u></td> </tr> <tr> <td><u>6년이상</u></td> <td><u>23 일</u></td> </tr> </tbody>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u>4 일</u>	-----	<u>10 일</u>	-----	<u>13 일</u>	-----	<u>16 일</u>	-----	<u>19 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 일</u>	<u>6년이상</u>	<u>23 일</u>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3 일</u>																																		
6월이상 1년미만	<u>7 일</u>																																		
1년이상 2년미만	<u>8 일</u>																																		
2년이상 3년미만	<u>11 일</u>																																		
3년이상 4년미만	<u>14 일</u>																																		
4년이상 5년미만	<u>17 일</u>																																		
<u>5년이상</u>	<u>20 일</u>																																		
<u>〈신 설〉</u>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u>4 일</u>																																		
-----	<u>10 일</u>																																		
-----	<u>13 일</u>																																		
-----	<u>16 일</u>																																		
-----	<u>19 일</u>																																		
<u>5년이상 6년미만</u>	<u>22 일</u>																																		
<u>6년이상</u>	<u>23 일</u>																																		
제19조(근속기간의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근속기간의계산) 제18조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u>편중되지 아니하도록</u>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u>편중되지 아니하고</u>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현 행	개 정 (안)
<u>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u>	<u>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u>
<u>제21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u>
<u>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u>	<u>-----.</u>
<u>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u>	<u>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u>
<u>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u>	<u>연 60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u>
<u>1. ~ 2. (생 략)</u>	<u>1. ~ 2.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u>
<u>③ (생 략)</u>	<u>③ (현행 제22조 제2항과 같음)</u>
<u>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u>	<u>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u>
<u>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질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u>참가하려 할 때</u></u>	<u>-----</u>
<u>2. (생 략)</u>	<u>1. -----</u>
<u>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u>참가하려 할 때</u></u>	<u>-----참가할 때</u>
<u>4. (생 략)</u>	<u>2.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3. -----참가할 때</u>
	<u>4. (현행과 같음)</u>
	<u>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 (생 략)	<p>6.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u></p> <p>7. <u>(현행 제23조 제5호와 같음)</u></p>
<p>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p>	<p>제24조(특별휴가) ① -----</p> <p>-----</p> <p>----- 경조사휴가 -----.</p> <p>② -----</p> <p>----- 출산휴가 -----.</p> <p>③ -----</p> <p>여성보건휴가 -----.</p> <p>④ -----</p> <p>-----</p> <p>-----</p> <p>수업휴가 -----.</p> <p>⑤ -----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 설〉	<p>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⑦ -----</p> <p>-----</p> <p>-----</p> <p>-----</p> <p>-----</p>
⑥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한 경력 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	

현 행	개 정 (안)
<p>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u>휴가를</u> 얻을수 있다.</p> <p>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5급공무원 이상을 <u>장으로 하는 소속행정기관에 소속된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행정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을 한다.</u></p> <p>② (생 략)</p> <p>제30조(정치적 행위)</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u>정치목적을</u>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행위를</u> 말한다.</p> <p>1. ~ 3. (생 략)</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u>착용, 권유</u>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	<p>퇴직준비휴가를 -----</p> <p>제28조(겸직허가) 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정치적 행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정치적 목적 -----행위를 험을-----</p> <p>1. ~ 3. (생 략)</p> <p>4. -----착용·착용권유 -----</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2. 6.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1996년 2월 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정함(안 제18조)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4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허영훈)

동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동조례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등포구 지방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관계법령인 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95. 12. 14)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96. 1. 3.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개정 형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 안 의 결